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2. 5 선고 2019가단868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

변론 종결 2020. 1. 15.

판결 선고 2020. 2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8. 11. 28. 접수 제766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임수희

별지